

방송 관련 업무 시 인원 기준 등 안내 (중앙사고수습본부)

□ 개요
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방송사에서 방송촬영 등 방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인원기준 등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준 안내

□ 주요내용

- 방송사의 촬영은 업무에 해당하여, 출연자, 스태프 등의 방송 관계자에 대한 인원 제한은 없음. 다만, 방청객 등 청중이 모이는 것은 모임·행사에 해당하여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인원 기준을 준수해야 함

구분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생활방역	지역적 유행 단계		전국적 유행 단계	
모임·행사	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·협의 필요, 방역수칙 의무화	1단계 조치 유지,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	100인 이상 금지	50인 이상 금지	10인 이상 금지

- 또한, 방송 출연자, 방송 촬영 및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인원을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환기·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가 필요함
-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「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」 를 참고